

의안번호	2219327
의 퇴 인	조승래의원
회 답 일	2026.08.20.
추계번호	26C2949
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2 신설 (국가 등의 사립대학 인수 특례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의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반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의 신청에 따라 그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·경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(제1항).	재량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사립대학 인수 및 설립·경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정책 수립 등 입법적·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(제2항).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인수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제3항).	
2	안 제19조제1항 제3호·제4호 신설 (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)	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「사립학교법」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(제1항). 3.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4. 공익성,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의2 신설 (국가 등의 사립대학 인수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9조제1항제3호·제4호 신설 (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)	· (미대상) 개정안에 따른 출연 범위 확대는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방법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립대학에 대하여 대학 및 학교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해당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인수 비용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, 개정안에 따른 사립대학 인수 요건이 ‘통폐합이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반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’로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임
 - 따라서, 현시점에서 인수 대상 대학 및 구체적인 인수 조건, 국가 등의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사립대학에서 국공립대학으로 전환된 사례로 인천대학교(舊선인학원)¹⁾가 있으나, 이는 학교법인의 기부채납 이후 인천광역시의 조례²⁾ 제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, 개정안의 내용과 그 양상이 상이하여 비용추계에 준용하기 어려움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현재 인천대학교는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2013년에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었음

2) 「인천대학교 운영 조례」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